

직장인을 위한 돈 되는 영수증

(국세청, 2007. 4.)

현금영수증

- 5,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,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매월 총 4억8천9백만원 규모의 복권당첨의 기회를 갖게 된다.

신용카드 영수증

- 신용·직불·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직불카드 영수증의 경우 추첨을 통해 매월 총 1억원의 복권당첨금을 지급한다.
- 자기명의로 아닌 다른 가맹점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단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.

지로납부 영수증

- 가족의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특히,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.

의료비 영수증

- 병·의원의 치료비, 의약품 구입비,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(단,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)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단,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, 동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액에서 제외된다.

보험료 영수증

-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다만,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.

교육비 영수증

-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,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다만, 보충수업비, 학교버스 이용료, 교육자재대, 책값은 공제대상이 아니다.

정치후원금 영수증

- 일반 국민이 정당(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/110의 세액공제를 받고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한편, 정치후원금은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입금증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.

기부금 영수증

- 수재의연금, 불우이웃성금, 장학금,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특히,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 봉사한 경우에도 “봉사일수* × 5만원”의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.

* 봉사일수 = 총봉사시간 / 8시간(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)